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종로구

부서명 (팀명)	어르신복지과 (어르신복지팀)	담당자	원성민	담당팀장	이군식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			
제정일		2014. 04. 25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노인일자리 창출의 정의</li> <li>□ 구청장의 책무</li> <li>□ 종합계획 수립</li> <li>□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</li> <li>□ 생산품 우선 구매</li> <li>□ 운영 및 예산지원 등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   불필요( <input type="checkbox"/>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,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</li> <li>□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고,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사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필요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 필요사항 없음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영등포구

부서명 (팀명)	어르신복지과 (어르신복지팀)	담당자	김혜진	담당팀장	이군식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			
제정일		2012. 10. 4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노인학대의 정의</li> <li>□ 구청장의 책무 - 재원마련 및 종사자 교육 등</li> <li>□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</li> <li>□ 협력체계의 구축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불필요( <input type="checkbox"/>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저소득 노인 인구의 증가로 소외 및 방치되기 쉬운 노인이 많을 것으로 예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노인인구 비율(15.7%) 및 노인인구 수 대비 기초연금 지급률(67%) 모두 서울시 자치구 중 1위</li> </ul> </li> <li>□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등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(공무원, 시설 종사자, 구민 등 대상)</li> <li>□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학대신고 접수센터 운영 필요 (구청 복지 소관 부서 및 동주민센터, 경찰서, 요양기관 등)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노인학대 예방 및 실태 조사 등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필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, 강북경찰서(노인안전협의회), 노인요양시설 등</li> </ul> </li> <li>□ 학대 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육·홍보 비용 등</li> </ul> </li> </ul>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양천구

부서명 (팀명)	건강증진과 (질환예방팀)	담당자	홍길순	담당팀장	승지순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(규칙)				
제정일	2013. 11. 5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</li> <li>□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예방관리가 필요함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   불필요( <input type="checkbox"/>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고령화 및 생활습관 등으로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혈압 평생의사진단 경험률(<math>\geq 30</math>)은 25.2%로 서울시 22.4%보다 높고 당뇨병 평생의사진단 경험률도 9.7%로 서울시 8.8%보다 높은 상태</li> <li>- 심뇌혈관질환이 전체 사망원인 2위이고, 고혈압, 당뇨병 등 단일상병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사용</li> </ul> </li> <li>□ “예방” 중심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와 건강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관리가 필요함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 제정 예정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초구

부서명 (팀명)	여성가족과	담당자	김상미	담당팀장	김은숙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5.2.12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(제1조) 「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」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.</li> <li>□ 구청장의 책무(제3조)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함.</li> <li>□ 실태조사(제6조) 경력단절여성등의 정책을 세우기 위해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할 수 있음.</li> <li>□ 지원사업 등(제7조) 구청장은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.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    불필요( <input type="checkbox"/>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제194회 임시회 의원발의 예정 (발의자: 구본승 의원, 김명숙 의원)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노원구

부서명 (팀명)	건설관리과 (가로정비팀)	담당자	김성진	담당팀장	강형배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				
제정일	2015. 4. 23 제정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점운영자 중 전업 희망자의 재취업 등 자립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위한 기금 설치·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□ 기금의 재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원구 특화노점에 부과되는 대부료 및 점용료</li> <li>- 노점 및 적치물에 부과되는 과태료</li> <li>-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등</li> </ul> </li> <li>□ 기금의 용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점상에서 타 업종으로의 전업을 위한 자금 융자</li> <li>- 전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자금 지원</li> <li>- 그 밖에 노점박스 개선사업 등</li> </ul> </li> <li>□ 기금 지원대상 : 지원신청일 당시 자체실태조사를 통해 생계형노점으로 인정된 노점영업자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장기검토				
장기검토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상기 조례는 노점 허가·허용제 시행을 전제로, 노점 허가·허용제를 수인하여 인적사항 제출 및 재산조회에 동의한 노점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제정된 것임</li> <li>□ 그러나 노점 허가·허용제 시행이 통행불편 상황을 고착화하고, 주변 상인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, 이 제도 즉각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</li> </ul>				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장기검토 사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다만 현재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타구 노점 허가·허용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입증 될 경우, 우리구에서도 주민을 설득하여 단계적 도입을 검토할 예정 임.</li> <li>□ 따라서 상기조례의 우리구 도입은 이러한 단계 이후에 고려될 상황으로 장기검토가 바람직함.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필요시 향후추진계획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노원구 담당부서와의 수시 교류와 협조를 통해,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,</li> <li>□ 효과성 입증 시 노점 허가·허용제 도입을 우선 추진하고, 이를 기초로 상기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예정임.</li> </ul>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양천구 외 9개 구

부서명 (팀명)	감사담당관 (민원조사팀)	담당자	구승규	담당팀장	이용훈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				
제정일	2015. 3. 26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</li> <li>□ 인권 교육 실시</li> <li>□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지원</li> <li>□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) 불필요( ✓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 우리구는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」가 2011.9.23. 제정되어 현재 운영 중</li> <li>□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12년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인권정책의 개발과 행정 및 재정상 조치, 인권전담부서 설치, 인권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, 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하여 서울시 자치구중 일부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사실상, 조례 제정만 되어 있을 뿐 전담팀을 만들어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지는 자치구는 극히 일부(3개 구)에 불과하며</li> <li>□ 관련 업무 범위와 규모를 고려했을시 광역단체 이상의 시·도 단위에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라고 판단되며 소규모 자치구에서 조례 제정 운영시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</li> <li>□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인권조례 제정 후 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 충원이 필수적으로 인력충원 가능성 여부를 행정지원과에 문의(감사담당관-12821호, 2015.10.8)한 결과, 우리구 인력 수급상 현재 결원이 34여명으로 충원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회신 받음 (행정지원과-27665호, 2015.10.14)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 인권업무 전담팀 구성을 위한 인력 확보시 조례 제정 추진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시 성북구

부서명 (팀명)	자치행정과 (주민자치협력팀)	담당자	조혜선	담당팀장	송우석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			
제정일		2014. 05. 29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(제5조)</li> <li>□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등(제6조)</li> <li>□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·징수(제10조)</li> <li>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(제13조)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
불필요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공시설 중 우리구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운영조례로 시설사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같은 조례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 무상이용원칙</li> <li>▪ 같은 조례 제11조 이용대상</li> <li>▪ 같은 조례 제10조 제1항, 제11조 제3항 사용료 부과·징수</li> <li>▪ 같은 조례 제11조 제4항 이용자 주의의무 등 (주요내용이 상기 타지자체 조례와 같음)</li> </ul> </li> <li>□ 또한 주민센터 외 공공기관의 시설이용에 대한 부분은 각 시설 관리 주체별 개별법 근거 등 검토 필요</li> <li>□ 따라서 우리구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및 조례와 타지자체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조례제정 불필요함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			

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특별시 관악구

부서명 (팀명)	교육지원과 (평생교육팀)	담당자	윤정식	담당팀장	나세열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인문학도시 조성 조례			
제정일		2014. 11. 13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 :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더 가치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도시 조성에 필요사항 규정</li> <li>□ 인문학 사업기본계획 수립·시행(제4조)</li> <li>□ 인문학지원센터 설치·운영(제5조~제6조)</li> <li>□ 인문학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(제7조~12조)</li> <li>□ 인문학 활동 지원(제13조)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관련 여건 열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관악구는 2004년 서울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, 평생학습관 운영, 평생교육사 채용, 교육사업과와 별도로 ‘도서관과’ 신설 등을 통해 평생교육과 인문학 관련 기본 인프라와 사업에 선두적 위치에 있음.</li> <li>- 우리구는 평생학습도시 미지정, 평생학습관 미운영, 평생교육사 미채용 등 인프라와 예산 등 여건이 열악한 편임.</li> </ul> </li> <li>□ 장기적 검토: 우리구도 ‘다산아카데미’ 운영 등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구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나, 해당 조례 제정은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특별시 성북구

부서명 (팀명)	교육지원과 (청소년복지팀)	담당자	조유미	담당팀장	곽노성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아동영향평가 등 실시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4. 05. 29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제3조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 )  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성북구의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는 ‘유니세프 아동친화 도시’로의 인증에 있어 세부평가기준[아동영향평가 항목]을 충족하고자 하는 자가 평가 과정에서 제정되었음.</li> <li>□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(2013.9.27자 제정)에 따르면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및 「아동복지법」에 근거하여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시책을 강구하고,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.</li> <li>□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와 큰 의미를 같이 하고 있음.</li> <li>□ 따라서, 아동 권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은 없으며 추후 아동 권리 존중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면 제정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함.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필요시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에 아동권리 영향평가에 관한 세부내용 보완</li> </ul>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광진구

부서명 (팀명)	세무과 (세입총괄팀)	담당자	이은희	담당팀장	김시현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				
제정일	2015. 07. 10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우리구에서는 2008년부터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우리구 지방세 성실 납세자 중 납세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를 유공납세자로 선정, 서울특별시장 표창 수상자로 추천하고 있으며</li> <li>□ 우리구의 납세자 중 총 28명 모범납세자로 선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08~2009년은 매년 2명, 2010~2013년은 매년 3명, 2014년은 4명, 2015년은 8명이 선정</li> </ul> </li> <li>□ 서울시에 이미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고, 주민의 복지와 생활편의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서울시 조례의 지원혜택이 자치구 조례의 지원혜택 보다 우수하여 우리구에 별도로 해당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됨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지원 혜택 비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울시 조례: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지 가점 부여, 우리은행을 통한 대출시 금리인하, 서울시 및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,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</li> <li>- 자치구 조례: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,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없음</li> <li>□</li> </ul>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구로구

부서명 (팀명)	생활보장과 (장애인복지팀)	담당자	한미례	담당팀장	유숙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1. 07. 20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9조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</li> </ul> </li> <li>□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</li> <li>□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및 직업 능력평가</li> <li>□ 예산지원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조례 분석 결과 실제지원내용보다 선언적 내용으로,</li> <li>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서는 「한국 장애인 고용공단」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동작구 외 2

부서명 (팀명)	생활보장과 (장애인복지팀)	담당자	최정하	담당팀장	유숙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(규칙)			
제정일		2014. 12. 4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</li> </ul> </li> <li>□ 수리업체 운영등</li> <li>□ 수리비용 지원기준</li> <li>□ 수리비용 지원절차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□ 참세상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부분은 불필요하다고 봄.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타 지자체명: 금천구

부서명 (팀명)	생활보장과 (장애인복지팀)	담당자	한미례	담당팀장	유숙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			
제정일		2015. 07. 15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자립생활지원 운영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거의 대부분의 규정이 관련 사업 지침에 언급된 부분을 인용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</li> </ul>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특별시

부서명 (팀명)	생활보장과 (장애인복지팀)	담당자	강태욱	담당팀장	유숙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여성장애인 임신·출산 양육 지원 조례			
제정일		2015. 07. 30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</li> </ul> </li> <li>□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</li> <li>□ 임신·출산·양육지원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서울시 조례에 의거, 서울시에서 현재 장애인 출산(유산, 사산)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, 우리구에서 조례 제정 시 중복사업이 될 수 있고,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.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동대문구 외 6개 구

부서명 (팀명)	생활보장과 (장애인복지팀)	담당자	한미례	담당팀장	유숙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			
제정일		2015. 09. 17.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인간다운 삶 보장</li> <li>□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</li> <li>□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</li> <li>□ 예산지원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 서울특별시 자치구 중 2개구(노원구, 은평구)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음</li> <li>□ 추후 우리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설치될 때,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</li> <li>□</li> </ul>			

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시, 서울 중구, 동대문구, 구로구, 노원구

부서명 (팀명)	여성가족과 (보육지원1팀)	담당자	허운정	담당팀장	차은실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4. 7. 17				
주요내용	<p>&lt;서울시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방사성물질 검사 실시 및 방사성 물질 검역체계를 수립</li> <li>□ 단체급식 식재료의 유통법인이 단체급식 시설에 납품하는 농수산물 샘플검사</li> <li>□ 방사능안전급식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영유아시설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</li> </ul> <p>&lt;자치구&gt;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</li> <li>□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검사 실시</li> <li>□ 안전한 식재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행·재정적 지원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자치구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 권한이 없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야 하며 식재료가 유통되기 전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채집한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것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이미 급식된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음</li> <li>□ 따라서 방사능 검사는 식품이 유통되기 전에 검사하여야 하고 이는 광역단체에 권한이 있어,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안전한 급식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경우 지원대상을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까지 검토가 필요하며</li> <li>□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</li> </ul>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특별시 노원구

부서명 (팀명)	여성가족과 (출산장려팀)	담당자	박주영	담당팀장	전혜정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5. 6. 25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	
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과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비와 시비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복지급여를 지원중에 있어 조례 제정시 복지에산의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</li> <li>□ 따라서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상 국비와 시비로 기 지원 중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 하다고 판단 됨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</li> <li>□</li> </ul>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특별시

부서명 (팀명)	도시계획과 (도시계획팀)	담당자	최성호	담당팀장	고주현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
제정일		2015. 1. 2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의 원만한 추진 지원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
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,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는 서울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선 조례제정이 불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.</li> <li>※ 참고로 별첨과 같이 서울시에서는 5곳에서 진행되고 있음</li> </ul>			
비 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우리 과에서 사무분장 받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시 소관부서 확인 결과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계획국이 아닌 주택정책 총괄부서인 “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재생정책과”에서 「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운영하고 있고,</li> <li>- 재생사업에 관한 업무는 기존에 재개발·재건축 담당부서인 “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기획관 주거재생과”에서 재생사업에 관한 직무를 추가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,</li> </ul> </li> <li>□ 향후,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한 재생사업 관련사항의 문서 분류는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리구 재개발·재건축·주거재생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부서로 문서를 분류하여 주시기 바람.</li> </ul>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관악구

부서명 (팀명)	디자인건축과 (도시디자인팀)	담당자	박철휘	담당팀장	노종섭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빈집 정비 지원조례			
제정일		2014. 3. 7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빈집의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, 정비예정구역의 경우에는 범죄, 붕괴,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설위험시설물 중 5건 공가 부분에 대하여 년 5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,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수·보강 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고 공가(빈집)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이 정비예정구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사업, 재개발·재건축 지역으로 필요하다면 동 사업을 주관하는 주택과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타 지자체명: 성동구

부서명 (팀명)	디자인건축과 (도시디자인팀)	담당자	정용근	담당팀장	노종섭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건강친화 건축물 디자인조례			
제정일		2015. 7. 9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강북구의 도시디자인 및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있는 <u>강북구 도시디자인 조례</u>상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은평구

부서명 (팀명)	디자인건축과 (도시디자인팀)	담당자	정용근	담당팀장	노종섭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			
제정일		2015. 08. 06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 주거용 건축물 건축허가 시 방법이 취약한 소규모 저층 주택의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~2층은 방범창을, 지상 4층까지 가스배관에는 보호덮개를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에 일조하고 있으며,</li> <li>□ 필요하다면 도로상에 CCTV를 설치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될 것인바, 현재 CCTV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로관리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성북구 외 5개구

부서명 (팀명)	환경과 (대기관리팀)	담당자	이승열	담당팀장	손승현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소음·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4.1.9. (서울시)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조용한 생활환경보호를 위한 광역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, 사업자의 책무, 주민의 책무 명시</li> <li>□ 소음·진동 발생 행위자에 대한 법령보다 구체적이고 강화된 규제 기준제시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소음·진동 관리법에 의거 소음·진동 행위 규제 및 조치가능</li> <li>□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거 없는 규제 강화 우려</li> <li>□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과 다른 기준이 규정되어지는 우려 발생(소송 등 분쟁유발)</li> <li>□ 법령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인천광역시, 대구광역시, 부산광역시, 서울 송파구 등

부서명 (팀명)	도로관리과 (시설관리팀)	담당자	장재근	담당팀장	이은철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5. 5. 21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건축관리자를 명시</li> <li>□ 상황에 따른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의 제설·제빙 책임순위를 표시</li> <li>□ 보도,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·제빙의 범위를 명시</li> <li>□ 내린 눈의 양에 따라, 주간 또는 야간에 따라 제설·제빙의 완료시간을 명시</li> <li>□ 보도, 이면도로, 보행자 전용도로 등 제설·제빙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2006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</li> <li>□ 서울시와 구청이 함께 ‘내 집 앞, 내 점포 앞 눈치우기’와 ‘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’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실정으로</li> <li>□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은 불필요함.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-				

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용산구

부서명 (팀명)	교통행정과 (교통시설팀)	담당자	이천주	담당팀장	김영곤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				
제정일	2015. 08. 07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“도로교통법” 제12조(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」은 현재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의 조문과 비교했을 때 제정 취지나 내용이 매우 비슷함.</li> <li>□ 「교통안전법」,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의 근거가 없음</li> <li>□ 또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8개의 자치구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모두 별도의 교통안전 조례가 없음.</li> <li>□ 하지만 우리구의 경우 「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」를 2014.11.28.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와 중복되어 추가로 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서울시, 양천구

부서명 (팀명)	교통행정과 (자동차관리팀)	담당자	김경호	담당팀장	임훈혁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5. 5. 14.				
주요내용	□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p>□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정비업, 매매업, 폐차업을 말하고 우리구에는 자동차정비업소(종합 3, 소형 1, 전문 121 개소)만 있으며 이중 전문정비업은 카센타 수준의 정비업소로 지정시 이득이 없이 도리어 부담감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크고</p> <p>□ 종합정비업소는 관내 도봉로 양끝과 중앙에 분산되어 있어 경쟁효과도 미미하고 업소에서도 관심을 보이지 않음</p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타 지자체명: 중구

부서명 (팀명)	보건위생과 (식품위생팀)	담당자	유종면	담당팀장	문상운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건강음식점 지원 조례(규칙×)			
제정일		2015. 02. 25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음식점 인증 및 홍보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 지원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건강음식점 지원사업은 시 정책사업으로 “서울특별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”에 의거 서울시가 건강음식점 인증(인증기준) 및 홍보, 표지판 제작 등 자치구로 지원하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별도 자치구 조례 제정이 필요치 않음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</li> </ul>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양천구, 구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서구

부서명 (팀명)	보건위생과 (식품위생팀)	담당자	유종면	담당팀장	문상윤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	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			
제정일		2014. 08. 12			
주요내용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식생활교육 계획수립 및 평가(매5년)</li> <li>□ 식생활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</li> <li>□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설치 등</li> </ul>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
필요/불필요 사유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서울시 또는 타 자치구 사례조사 결과 조례 제정후 추진 사항이 전무한 실정임 (식생활 5개년계획, 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, 교육지원센터 등)</li> <li>□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(요구) 등 예산 수반의 필요성</li> <li>□ 지나치게 상징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서울시 식생활 기본교육수립 등 추이에 따라 재검토 예정임</li> </ul>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	□ 향후 서울시 식생활교육기본계획 수립 등 추이에 따라 재검토 예정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송파구

부서명 (팀명)	의약과 (의약팀)	담당자	정준모	담당팀장	김문희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3. 12. 19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구청장의 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출·수집·운반·처리의 관리체계 마련</li> </ul> </li> <li>□ 구민의 책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국,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·배출</li> </ul> </li> <li>□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약국, 보건소는 수거거점 역할 수행(용기비치, 보관 등)</li> <li>- 분기별 1회 이상 수거 보관, 처리업체 위탁 소각처리</li> </ul> </li> <li>□ 현저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정 폐의약품 회수처리방식은 2013.9.11.부터 시행 중으로 약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되었으며,</li> <li>□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에서 실시한 2015년 실태조사 시 우리구 처리방식을 모범사례로 인정하여 금년에 개선보완한 환경부의 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(2015.8.5)’ 내용 중 폐의약품 수거절차에 관한 내용은 우리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어 주민복지 증진(무상배출, 직접수거에 따른 주민편의 제고, 환경위해성 예방 등)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불필요함.</li> <li>□ 처리방식: 87개 수거거점 약국으로 배출(그 외 약국은 수거거점 약국으로 배출) → 매월 1회 청소차량이 수거일(매월 2,4째주 수요일)에 직접 순회하여 수거 → 소각처리(처리업체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폐의약품 수거차량 운영 및 소각처리: 청소행정과</li> <li>□ 수거 거점 약국 선정: 의약과, 강북구약사회</li> <li>□ 수거실적: 2012년 4,100kg, 2013년 7,100kg, 2014년 6,360kg, 2015년(9월말) 7,180kg</li> </ul> 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폐의약품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 제1항,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, 동법 시행규칙 제14조관련 별표5(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)의 규정과 같이 소각처리 대상 생활폐기물으로써, 조례제정이 필요할 경우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의약과에서 협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li> </ul>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□ 타 지자체명: 도봉구

부서명 (팀명)	지역보건과 (가족건강팀)	담당자	고은상	담당팀장	박애숙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				
제정일	2014. 12. 31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상 외 추가 지원 대상자 범위 규정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√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」에 의한 예외 지원 대상자의 범위내에서 추가 확대지원을 실시할 예정으로 별도의 조례 불필요 (도봉구의 경우 예외지원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산모 까지 확대지원 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)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

#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검토의견서

타 지자체명: 양천구

부서명 (팀명)	지역보건과 (가족건강팀)	담당자	김주양	담당팀장	박애숙
타 지자체 자치법규 제명	소아당뇨 인식개선을 위한 조례				
제정일	2014. 6. 27.				
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소아당뇨에 대한 인식개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, 홍보, 캠페인 등 소아당뇨 환우 지원에 관한 사항</li> </ul>				
우리구 자치법규 제·개정 반영 필요성	필요(            )    불필요(    ✓    )				
필요/불필요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「모자보건사업 지침」에 의한 대사이상환아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</li> <li>□ 지원예외대상자인 소아당뇨에 대한 지원은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 별도의 조례 불필요</li> </ul>				
필요시 향후추진계획	□				